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상용 연구위원

최근 저금리로 인한 고수익 추구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역외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역외보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저금리로 인해 고수익 추구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금리를 미끼로 역외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감독당국도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함
 - 역외보험거래(Cross-Border Insurance Contract)는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국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를 의미함
 -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는 연 6~7%의 복리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하여 홍콩 소재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들 수 있음
 -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 역외보험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였음
- 현재 보험업법과 보험업 감독규정은 역외보험 거래의 허용과 체결 및 모집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험업법 제 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 7조 1~5항은 국내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음
 - 역외보험이 가능한 경우는 국내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

이 거절되는 경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종목에 대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등임

- 현재 생명보험,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해 역외보험이 허용되고 있음

- 보험업 감독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역외보험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 통신에 의한 방법만이 허용되며 해외보험회사가 임원 또는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국내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이나 국내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한 가입은 금지되고 있음¹⁾

■ 역외보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들이 국내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과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였음
 - 역외보험을 통해 국내 보험소비자들은 외국보험회사와 거래하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분산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역외보험 거래에서 외국보험회사는 국내 영업을 위해 사업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감독의 대상을 정하기 어려워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음
 - 외국 보험사업자로부터 역외보험 상품을 구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은 주로 국제교역과 관련된 보험이나 재보험을 역외보험의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도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표 1) 참조

- 기업성 보험의 경우 재보험 등 국제적 거래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역외보험에 대해 외국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재무건전성을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계성 보험의 경우 어려움이 존재함
 - 개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음

1) 재보험 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중개사를 통한 역외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있음

〈표 1〉 국가 별 역외보험 허용 종목

국가	역외보험 종목
한국	생명보험,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또는 재보험
미국	재보험, 원양해상보험, 해당 주 이외의 소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험
영국	EU역외 보험사업자에 대해 일부 강제성보험(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자동차 대인배상보험,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 및 변액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 없음
프랑스	재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일본	재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우주항공보험, 운송보험, 해외여행상해보험

자료: 한국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미국 뉴욕보험법 제1101조, 제2117조; EU 생·손보 제3지침; 프랑스보험법 제310-10조; 일본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 개인보험의 역외보험 거래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를 고려할 때, 개인보험을 역외거래 허용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외 주요국들의 역외보험은 주로 기업성보험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가계성 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의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변액보험) 등의 역외보험 거래를 금지하여 가계성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역외보험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관련보험 등 손해보험으로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역외보험에 대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가계성 보험과 그렇지 않은 기업성 보험을 다르게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계성 보험에 해당하는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의 종목에서 제거하거나 보다 엄격한 감독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감독당국은 역외보험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와 분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험 소비자에 대해서도 역외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역외보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리스크에 대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함
- 역외보험의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위해 역외보험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의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본의 보험업법 제 186조 제 2항은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역외보험이 허가된 보험종목에 한하여 내각 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 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역외보험 거래를 하기 전에 외국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kiri](#)